

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홍성룡 의원 (대표) 발의)

의안 번호	337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1월 24일
발 의 자 : 홍성룡 의원(1명)
찬 성 자 : 노승재, 이승미, 고병국, 경만선,
성중기, 우형찬, 오중석, 송아량,
김경영, 이영실, 박순규, 박기재,
채유미, 김경우, 이정인, 오현정,
유 용, 최정순, 문장길, 최웅식,
노식래, 전병주 의원(22명)

1. 제안이유

의안의 비용추계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의안의 발의·접수 등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의원·위원회는 의안의 비용추계가 불필요한 사항의 경우 비용추계서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의안을 직접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조제3항 신설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서울특별시의회 의안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원·위원회는 의안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.

1. 상위법령 개정 및 기관(조직)변경에 따른 조례개정인 경우
2.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의한 단순한 자구 수정인 경우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~ ② (생략)</p>	<p>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원·위원회는 의안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상위법령 개정 및 기관(조직)변경에 따른 조례개정인 경우 2.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의한 단순한 자구 수정인 경우

<신 설>